

FTA 관련
질의답변·지시지침 사례집 목차

2024. 2.

목 차

질의회신 _ 협정별

1. 공 통

1	B/L양수도 거래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자	1
2	BOM 작성 방법 및 증빙자료	1
3	E-mail로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1
4	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1
5	FTA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원본보관 의무	2
6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2
7	FTA 협정상 OEM 생산제품의 원산지 관련	2
8	FTA협정세율 적용시 제3국 송품장(INVOICE)발행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은	3
9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용 세트물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3
10	OEM, ODM방식 생산물품의 수입시 FTA적용 가능여부 등	3
11	국내제조확인서 관련	3
12	대체가능물품의 재고물품 관리법	4
13	마른김의 원산지충족 입증자료	4
14	무상물품의 원산지기준 판정	4
15	법인 단위업체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4
16	법인사업자 분할시 인증수출자 지위 인정가능여부	4
17	보세공장 반입물품 재 반입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관련	4
18	보세공장으로 원료수입 후 생산한 물품이 FTA협정세율이 적용가능한가.....	5
19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 관련	5
20	부가가치기준물품의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5
21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비 공제 관련	5
22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6
23	쌀 완전생산 입증서류	6
24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6
25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7
26	소매용 포장용기 등 원산지확인서 관련	7
27	수돗물의 원산지 입증 자료	7
28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7
29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7
30	수입신고서상 수출자와 C/O상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C/O 유효성 여부	8
31	수입신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8
32	수입신고 이후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8
33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8
34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관련	9
35	수확시기에 따른 물품의 직접운송 해당여부	10
36	스크랩 및 폐기물의 완전생산 입증자료	10
37	완전생산 입증서류	10
38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의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10
39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질의	11

4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관련	11
41	원산지 신고서 작성 요건	11
42	원산지증명서 결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1
43	원산지증명서 구축관련 질의	11
44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의 경미한 차이 인정여부	12
45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의 해석	12
46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기와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12
47	원산지증명서 보관 관련	12
48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13
49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3
50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3
51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3
52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	13
53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관 의무	14
54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 전자이미지화 했을 경우 원본 인정 여부	14
55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14
56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	14
57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방법	14
58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발급면제 관련	15
59	원산지증명서 지연 발급시 적용 방법	15
60	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전자문서 보관 가능여부	15
61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15
62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작성방법	15
63	원산지확인서 공급자 기재 방법	15
64	원산지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16
65	원산지확인서 발급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16
66	원산지확인서의 공급받는 자	16
67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관련	16
68	원산지확인서 작성 여부 질의	17
69	원산지확인서 재발급시 유효성 여부	17
70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가공공정 적용시 공정기준 충족 여부	17
71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여부	17
72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여부	17
73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여부	17
74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여부	17
75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여부	17
76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 제출기한	18
77	인증수출자 인증방법	18
78	임가공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8
79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수입시 적출국을 한국으로 기재 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18
80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의 사후적용신청 가능여부	18
81	자재명세서(BOM) 작성시 간접재료 기재 방법	19
82	재고관리기법 적정성관련 질의	19
83	재수입물품에 대한 협정적용 방법	19
84	제3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의 인정여부	19
85	제품생산시 발생한 스크랩의 역내산 인정여부	20
86	주택건축용 자재(가공목재) 수입물품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20
87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와 원산지입증자료	20
88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입증자료	20
89	지하수의 원산지 입증자료	20
90	직접운송에서의 '경유'의 의미	21
91	직접운송 요건 충족 증명방법	21
92	최소허용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관련	21
93	품목별 인증수출자 변경신고 대상	21
94	할인받은 물품의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분모대입 가격	21

92	해외기술개발 비용이 포함된 자동차 제어용 칩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에 해외기술개발비용을 추가하여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22
93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및 제출서류	22
94	협정관세 사후적용 방법	22
95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22
96	협정관세 사후적용 후 가산세 환급 여부	22
97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 관련	23
98	협정관세 적용후 송품장 가격 증액시 협정관세 적용 방법	23
99	협정발효일 이전 공급된 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23
100	협정 발효 전 공급물품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23

2. 한-EU FTA

1	AWB의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24
2	BWT거래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24
3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24
4	EU 국가 내에 있는 수출자가 EU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의 물품을 수출해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4
5	EU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여 표면처리 가공 후 재수출시 국내산 인정 여부	24
6	EU 소재 수출자가 다른 EU 수출자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25
7	EU에서 수입했던 6,000유로 이하의 원산지제품을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출했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수리비를 탁송화물 전체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인증 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25
8	EU역내 국가에서 분리작업한 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26
9	EU역내국가에서 환적된 경우 환적표기 여부	25
10	EU역내국 경유시 직접운송 충족 여부	25
11	EU역내 수출자가 아닌 비당사국에서 재발행한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 유효성 여부	26
12	EU역내의 보세창고(Warehouse)에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26
13	HS7228.20호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질의	26
14	SKD(Semi Knock-Down)상태 증명	26
15	6천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여부	27
16	6천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여부	27
17	6천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여부	27
18	개성공단産 원재료가 투입된 완제품의 원산지판정(한-EU, 한-미 FTA)	27
19	개인 수출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여부 관련	28
20	개인 이사차량 수입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28
21	경유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여부	28
22	공급국과 생산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발행 등	28
23	공장도가격 산정 관련	29
24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29
25	관세청 지침과 상이한 스페인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의 정확성 문의	29
26	국내 BWT거래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30
27	국내 양수도 거래로 원산지신고서상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30
28	국내에 도착된 이후 그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30
29	국내에서 회수한 중고품의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해당 여부	30
30	노르웨이 업체가 스페인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시 원산지 신고서 인정 여부	30
31	단일 탁송화물에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31
32	덴마크에서 중국을 거쳐 반입된 물품이 최초 B/L과 중국발행 B/L이 다른 경우 협정적용 가능 여부	31
33	독일의 수출자가 네덜란드 원산지제품 수출시 원산지 신고문안	31
34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영국산 제품을 영국에서 선적 운송하는 경우 독일에서 작성된 신	31

고서 인정 여부	
35 말어권 원산지증명서 가능 여부(한-EU, 한-미 FTA)	31
36 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32
37 보세건설장 건설완료물품의 원산지결정	32
38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32
39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	32
40 보세건설장 사용소비물품의 FTA 적용 여부	32
41 보세판매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33
42 불인정공정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33
43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충족여부	33
44 비당사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입증자료	33
45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34
46 비당사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협정관세적용 가능 여부	34
47 비당사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34
48 비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34
49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여부	34
50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여부	35
51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가능여부	35
52 사후적용 관련	35
53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호로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35
54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36
55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36
56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36
57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36
58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36
59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 상업서류 인정 여부	37
60 선하증권에 원산지신고문안 작성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 여부	37
61 송장 등이 제3국에서 다시 발급된 경우	37
62 송장 양식과 일부 상이한 경우 한-EU FTA 적용 가능 여부	37
63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된 경우 EU 역내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제출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37
64 송품장에 기재된 HS번호와 수입신고시 HS 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38
65 송품장이 아닌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작성된 경우 유효성 여부	38
66 수리물품 재수입시 가공비와 운임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38
67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기간 관련	38
68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 여부	39
69 수입신고서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상이할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39
70 수출물품의 세번이 계약상대국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39
71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비당사국 생산자 앞으로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39
72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39
73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40
74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40
75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40
76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40
77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및 기재사항	40
78 수출자와 생산자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41
79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41
80 수출자의 범위	41
81 수출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41
82 수출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하여 소급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42
83 수출 후 인증수출자 취득하여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여부	42
84 스위스에서 사용중인 설비를 네덜란드 수출자가 한국으로 수출시 적용	42

85	스위스 원산지 물품이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증빙 서류는	42
86	스탬프를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42
87	신발의 갑피와 안창 원산지 결정기준	43
88	알루미늄빌렛(제7601.2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대상	43
89	어획물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43
90	여러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43
91	여행자 휴대품 간이통관시 구매영수증	44
92	여행자 휴대품 간이통관시 구매영수증에 판매자 서명 누락	44
93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신고 관련	44
94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신고 문안 작성방법	44
95	여행자휴대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44
96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45
97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45
98	역외산물품을 수출국에서 소분작업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45
99	영국의 수출자가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품을 프랑스에서 수출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45
100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외에 직접운송 원칙의 적용범위는	46
101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물품과 당사국이 아닌 물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 관련	46
102	원산지가 협정당사국인 물품과 당사국이 아닌 물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여부 ..	46
103	원산지상품 해당여부	46
104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이전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46
105	원산지신고문안 관련	47
106	원산지 신고문안 수기 작성에 대한 질의	47
107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국명표기는 방법은	47
108	원산지 신고문안에 표기하는 원산지 및 표기방법	47
109	원산지 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와 인증번호 기재 위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는지	48
110	원산지신고문안을 협정에서 정하는 문구이외에 다른 문구가 포함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48
111	원산지신고문안의 “ EUROPEAN UNION” 적정성 여부	48
112	원산지 신고문안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인정 범위	48
113	원산지신고문안의 원산지표기	49
114	원산지신고문안의 유효성 질의	49
115	원산지 신고문안이 협정과 다른 경우 유효성 여부	49
116	원산지 신고문안 인정 여부	49
117	원산지신고서	49
118	원산지신고서 관련	50
119	원산지신고서 관련	50
120	원산지신고서 관련	50
121	원산지신고서 관련	51
122	원산지신고서 관련	51
123	원산지신고서 관련 질문	51
124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	51
125	원산지신고서 기재방법	51
126	원산지신고서로 송품장이 아닌 다른 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2
127	원산지 신고서 및 수출자	52
128	원산지신고서 상세내역 관련	52
129	원산지신고서 신고문안과 다른 경우	52
130	원산지 신고서에 국가명이 “UE” 로 표기된 경우 유효 여부	53
131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국가 기재 방법	53
132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기재된 경우 적용 가능 여부	53
133	원산지신고서 원산지국가 표기방법	53
134	원산지 신고서 유효성여부 관련	53
135	원산지신고서 유효 여부	54

136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54
137	원산지신고서 인정가능여부(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관련)	54
138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서류	54
139	원산지신고서 작성관련	55
140	원산지신고서 작성관련	55
141	원산지신고서 작성관련	55
142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55
143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56
144	원산지신고서 작성주체	56
145	원산지신고서 적용 관련	56
146	원산지신고서 적정 여부	56
147	원산지신고서 적정 여부	57
148	원산지신고서 종류 및 인정요건	57
149	원산지신고서 표기 관련	57
150	원산지신고서 형식요건 관련	57
151	원산지신고서(편지) 관련	58
152	원산지 유럽연합 인정 누적기준	58
153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방법	58
154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 혼재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58
155	원산지제품 해당 여부	58
156	원산지증명 관련	59
157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	59
158	원산지증명서 관련	59
159	원산지증명서 국가명 표기방법	59
160	원산지증명서 사본 보관 관련	60
161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관련	60
162	원산지 증명서 작성방법	60
163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	60
164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적용 방법	60
165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해당 여부	61
166	원산지증명서 효력 여부 관련	61
167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61
168	원산지코드	61
169	원산지확인서 작성 관련	62
170	원상태 수출시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여부	62
171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62
172	의류(61류)의 원산지결정기준	62
173	이사화물차량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62
174	이탈리아 수출물품을 벨기에 원산지신고서	63
175	인보이스에 수출자명 대신 스탬프로 표기된 경우 인정 여부	63
176	인보이스에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기재된 경우	63
177	인증받지 아니한 수출자 인정 여부	63
178	인증수출자가 EU내 다수의 제품에 대한 각각의 원산지를 표기할 경우 인정 여부	63
179	인증수출자가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시 인정여부	64
180	인증수출자 관련	64
181	인증수출자 번호기재란에 REX번호 기입시 인정가능여부	64
182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관련	64
183	인증수출자번호 유효성 관련	64
184	인증수출자 번호의 송품장 기재 위치에 따른 유효여부	65
185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관련	65
186	인증수출자(타사가 수출국 인증수출자) 관련	65
187	자동차부품 수입 관련	65

188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66
189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관련	66
190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66
191	작성일자가 누락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 가능 여부	67
192	적용 관련	67
193	적용 관련 등	67
194	적용 관련 질의(한-EU, 한-미 FTA)	68
195	적용 방법 및 사후적용 가능여부	68
196	적용시점 질문	69
197	적용신청기간	69
198	적용신청기간 질의	69
199	적용 여부	69
200	적용 여부 관련	70
201	전자상거래 물품(Ebay 사이트 구매)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70
202	제15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방법	70
203	제3국 BWT거래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71
204	제3국 경유 인정여부	71
205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EU역내 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여부	71
206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71
207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71
208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생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	72
209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	72
210	제3국 발행 송장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72
211	제3국 발행 송장에 원산지신고문안 작성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72
212	제3국 소재자 원산지신고서 관련	72
213	제3국 소재자와 거래계약 체결	73
214	제3국 소재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경유하는 경우 협정 적용여부	73
215	제3국 송장 거래시 생산자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73
216	제3국 송장거래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73
217	제3국에서 송장이 다시 발행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74
218	제3국에서 송품장이 다시 발행되는 무역형태의 경우, EU 역내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 인 Customs Origin Declaration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정여부	74
219	제3국에 소재한 업체가 송품장을 작성하는 경우 인정범위는	74
220	제3국에 있는 제3자 물류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제3자가 수출판매하는 경우 제3국 경유 인정 여부	74
221	제5903호 원산지 결정기준	75
222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75
223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75
224	중간재 적용가능 여부	75
225	중고수입 설비 등 관련	75
226	직접운송 관련	76
227	직접운송 관련	76
228	직접운송 관련	77
229	직접운송 원칙	77
230	직접운송 인정여부	77
231	직접운송 입증서류 관련	77
232	직접운송 증명방법	78
233	직접운송 증빙서류	78
234	직접운송 충족입증서류	78
235	총금액이 150달러 미만인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78
236	탁송화물 가격산정 관련	78
237	탁송화물의 가격산정 관련	79
238	통과선하증권의 해석	79

239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79
240	폴란드 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여부	79
241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서 양식 관련	79
242	프랑스의 물류창고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80
243	프랑스의 업체가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80
244	하자있는 인보이스로 협정적용 후 사후에 보완된 인보이스로 재신청 가능 여부	80
245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로 'EUR1' 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80
246	한-영 FTA발효 이후 영국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충족여부(BWT거래시)	80
247	해외직구물품의 협정적용 방법	81
248	협정관세 사후적용	81
249	협정관세 적용방법	81
250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필요서류	81
251	협정문구와 인증번호 위치	81
252	협정세율 적용 관련	82
253	협정적용가능 여부	82
254	협정적용 관련	82
255	협정적용신청서 작성시 수출자 기재방법	82

3. 한-미 FTA

1	B/L양수도 거래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83
2	HS2009.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83
3	계절관세 적용 관련	83
4	곡류 가공품 수입 관세 관련	83
5	골프채 부분품을 중국, 미국에서 수입하여 조립 등 가공한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 인정여부	84
6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	84
7	관세면제 해당여부 질의	84
8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서 관련 질의	84
9	국내 BWT거래시 C/O수입자와 실제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적용 방법	85
10	긴급수입제한조치(ASG) 품목 관련, 수입신고 취하지 배정물량 복구 여부	85
11	다른 세번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적용가능여부	85
12	미국산 물품이 네덜란드를 경유시 증빙자료 요건	85
13	미국산 물품이 중국 경유시 중국의 재수출증명서가 직접운송 증빙서류 가능 여부	85
14	미국산 물품이 홍콩 경유시 적재항이 홍콩으로 표기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86
15	미국산 제어반을 독일로 수출하여 독일에서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후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86
16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폼 배개의 커버가 중국산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	86
17	미국 제조라인 전체를 한국에서 수리, 개조 후 미국으로 재수출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86
18	미화 1천달러 미만 제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방법	86
19	미화 1천달러 이하인 주류에 표기된 방법에 따른 협정 적용 가능 여부	87
20	발급번호가 없는 원산지 증명서 등의 협정관세신청서 기재 방법	87
21	발전기 구성요소별 신고하던 것을 하나의 기능단위로 신고할 때 협정 적용 방법	87
22	보세건설장 조립물품에 대한 적용여부	87
23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	87
24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88
25	불인정공정 충족 필요 여부	88
26	비당사국 경유물품 직접운송 충족여부	89
27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89
28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89
29	비당사국에서 단순가공한 물품의 협정적용가능 여부	89
30	비당사국에서 소분, 포장작업시, 직접운송요건 충족여부	89

31	사후적용 관련 질의	90
32	상업서류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여부	90
33	생산자발급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소명 의무자....	90
34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90
35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90
36	소액물품 관세면제규정	93
37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91
38	소액물품 협정적용 가능여부	91
39	수리 및 개조 해당여부	91
40	수입원유가 보세구역 내 잔존유와 혼합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91
41	수입자발행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92
42	수입자 보관서류 관련	92
43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해당 여부	92
44	수입통관 완료된 할당물량 물품이 멸실된 경우 다른 수입통관건 대체 가능 여부	92
45	수지(resin)에 착색제를 첨가한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93
46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련	93
47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 관련	93
48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관련	93
49	여행자 휴대품 협정적용 가능 여부	94
50	연구목적 수입물품 협정적용 가능여부	95
51	영역해당 여부	95
52	운송관련	95
53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관련	95
54	원산지기준 표기 해석	96
55	원산지 입증서류 관련 질의	96
56	원산지제품 관련	96
57	원산지 증명방법 등	97
58	원산지증명서 HS Code 기재 등	97
59	원산지증명서 관련	98
60	원산지증명서 관련	98
61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98
62	원산지증명서 사본보관 관련	98
63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기재방법	99
64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다른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99
65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99
66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란에 비당사국 수출자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99
67	원산지증명서 인정가능여부	100
68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100
69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100
70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수입자'기재 방법	101
71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101
72	원산지 포괄증명 관련	101
73	원산지 포괄증명(증명일자 경과) 관련	101
74	원산지 포괄증명서 관련(증명기간)	102
75	원산지 확인 관련	102
76	원산지확인(멕시코산 라임) 관련	102
77	이사물품의 원산지증명 관련	102
78	이사물품인 차량의 협정적용시 구비서류는	103
79	이사차량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103
80	이사차량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103
81	이사화물차량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104

82	자유무역지역(FTZ) 공정수행시 적용 여부	104
83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여부	104
84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수작업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104
85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105
86	재수입물품의 협정적용 가능여부	105
87	제0910.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05
88	제1901.20호의 원산지기준 해석방법	105
89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기준	105
90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기준 해석	106
91	제39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06
92	제3907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06
93	제5903.90호 원산지기준 해석 방법	106
94	제6104.12호 원산지 결정기준	107
95	제730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07
96	제8411.81호의 원산지기준의 해석 방법	107
97	제8414.80호의 원산지기준의 해석 방법제8414.80호의 원산지기준의 해석 방법	107
98	제8483.5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08
99	제3국 경유물품 관련	108
100	제3국 경유물품 관련	108
101	제3국 경유물품이 운송원칙을 충족하는 서류인지	109
102	제3국 경유물품 입증관련	109
103	제3국 경유 수입물품 관련	109
104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B/L상 송하인	110
10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110
106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부가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조정가격 산정방법	110
107	제3국 발행 송품장상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정보 기재 여부	110
108	제3국송장 거래 및 통과, 환적운송 관련	110
109	제3국에서 수리한 물품의 협정관세적용 가능 여부	111
110	제3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11
111	제3국이 수입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111
112	중고자동차 협정관세 적용 관련	111
113	직구한 1천불 이하 맥주에 Torrance, CA 라고 표기된 경우 협정적용 가능 여부	112
114	직접운송 충족여부	112
115	직접운송 충족여부	112
116	참치 캔 협정관세적용 질의	112
117	최소기준 충족여부	112
118	최소허용기준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관련	113
119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적용 가능 여부	113
120	최소허용수준 적용가능여부	113
121	포괄원산지 관련	113
122	포괄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113
12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114
124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제7부 관련	114
125	품목분류 관련	114
126	품목분류 변경 물품의 사후적용 신청 기한	114
127	품목분류 상이 관련	115
128	품목분류 상이 관련	115
129	품목분류 상이할 경우	115
130	한국산 물품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115
131	한-미 FTA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대상	115
132	할당받은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비할당 물품의 반송 여부	116
133	해외직구 1천달러 미만의 와인에 'Made in California'로 표기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116

134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한-미, EU)	116
135	협정적용 방법	117
136	협정적용신청서 작성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기재 방법	117

4. 한-중 FTA

1	C/O의 유효성 여부	117
2	Certificate of Processing의 유효성	117
3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18
4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18
5	경유국에서 발급한 B/L의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여부	118
6	누적기준에서 ‘결합’의 의미는	118
7	누적적용 방법	118
8	다수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기재 관련	118
9	대량원재료를 보세창고에 반입후 분할통관하는 경우 총중량 기재된 CO 인정 여부	119
10	동일물품에 대하여 2개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19
11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제품과세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119
12	보세공장 사용신고물품의 원상태 국내 수입 시 협정세율 적용 여부	119
13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규정	120
14	비당사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충족 여부	120
15	비당사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의 적용여부	120
16	비당사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직접운송 충족가능여부	120
17	비당사국에서 최종포장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20
18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방법	121
19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21
20	설비를 해체상태로 수출하여 상대방국에서 조립시 HS 통칙 제2호 적용 가능 여부	121
21	세번변경으로 기존 협정 불가시 다른 협정 적용 여부	121
22	세번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번이 변경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121
23	수리물품 재수입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122
24	수입당사국에 소재한 제3자가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재 방법	122
25	수출자정보가 추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122
26	여러 개의 인보이스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22
27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 여부	122
28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제 8462.10호)	123
29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23
30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 혼재시 원산지증명서 물품수량 기재방법	123
31	원산지상품과 비원산지상품 혼재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수량	123
32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대리인 범주	123
33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여 수입된 물품의 국내거래시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여부	124
34	원산지증명서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BOM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가능여부	124
35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작성방법	124
36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24
37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24
38	원산지증명서의 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125
39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이 1년 경과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인정 여부	125
40	원산지증명서의 분할사용 가능 여부	125
41	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와 실제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인정가능여부	125
42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25
43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26
44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26
45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26

46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126
47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26
48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우리나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26
49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리인 발급 가능여부	127
5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27
51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127
52	원산지증명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정가능여부	127
53	원산지증명서 을지 사용	128
54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128
55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제3국발행 송장거래 정보 기재방법	128
56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적용 방법	128
57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해당 여부	129
58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29
59	원산지 증명자료 관련 질의	129
60	원재료의 세번이 계약상대국의 세번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기준 판정시 적용되는 원재료 세번	130
61	임가공 물품의 수입시 원산지 증명 발급 가능 여부	130
62	제3국 경유시 당사국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130
63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비당사국 정보 기재 여부	130
64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130
6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번호	131
66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131
67	제3국 Invoice발행 원산지증명서 유효여부	131
68	중계거래 무역시 원산지 증명서에 중계인의 정보없는 경우 유효 여부	131
69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131
70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공약품의 중국에서 수출시 HS와 수입시 HS가 상이한 경우	131
71	중국에서 조립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한 후 다시 중국 판매시 한국산 가능 여부	132
72	직접운송요건 입증방법	132
73	직접운송 입증서류 관련	132
74	코로나 19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지연 발급 문의	132
75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132
76	통과선하증권의 인정범위	133
77	품목분류 통칙 제2호 적용 물품의 FTA CO 인정 여부	133
78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TROs) 적용 방법	133
79	홍콩 경유 수입물품의 적출국, 환적국 기재 방법	133
80	홍콩 경유하는 수출물품의 목적항이 홍콩으로 기재된 AWB기반 원산지 증명서 발급	133
81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B/L상 선적일이 홍콩인지 중국인지	134
82	홍콩 업체가 중국산 물품을 중국에서 선적하면서 동 업체가 운송서류 발급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134
83	홍콩 지정장소 명칭의 인정여부	134
84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질의	134

5. 한-아세안 FTA

1	CTC+SP 인정여부	135
2	C/O 을지 미사용 질의	135
3	CO-PASS에서 원산지내역이 조회될 경우 사후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	135
4	FOB VALUE 환율 선택 관련	136
5	WO-AK 인정여부.....	136
6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36
7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 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136

8	국내 BWT거래시 협정관세 적용가능여부	137
9	국내에서 회수한 폐고철 스크랩의 원산지 결정	137
10	누적적용 가능여부	137
11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37
12	라벨의 원산지 상품 결정요인 여부	137
13	미소기준 적용 가능 여부	138
14	미얀마 물품이 싱가포르 경유시 선적항 등이 미얀마로 표기된 경우 운송서류 인정 여부	138
15	보세공장반입 원재료를 가공없이 반출시 협정적용 가능여부 및 신청시기	138
16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FOB가격 산정방법	138
17	부가가치기준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38
18	부가가치비율 계산시 직접법과 공제법 선택사용 가능 여부	139
19	비당사국 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139
20	비당사국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139
21	선적일로부터 3일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소급문구가 없는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139
22	선적일 후 발급된 B/L 인정가능 여부	139
23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FOB가격 기재 여부	139
24	소급발급 문구 기재 방법	140
25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 또는 인장이 없을 경우 인정 여부	140
26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기재 방법	140
27	수출국으로 재수출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40
28	수탁가공물품의 가공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41
29	아세안회원 국가가 아닌 제3국의 업체가 송품장을 발급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재요령은	141
30	양도된 원산지증명서 인정가능여부	141
31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관련	141
32	역외가공 인정여부 관련	141
33	연결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141
34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42
35	연결원산지증명서 발행 시기 및 제출서류	142
36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필요 여부	142
37	연결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	142
38	연결원산지증명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143
39	완전생산기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43
40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의 범위	143
41	운송 관련	143
42	원산지 결정기준	143
43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144
44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144
45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	144
46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45
47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하나의 C/O에 혼재되어 작성된 경우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한지	145
48	원산지상품 해당여부	145
49	원산지증명서 관련	145
50	원산지증명서 관련	145
5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146
5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146
53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관련	146
54	원산지증명서상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146
55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과 Invoice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146
56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과 인보이스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147
57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관련	147
58	원산지증명서 상 표기되지 않은 구성품(미국産 프로브)의 협정세율 적용 가부	147

59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장 기재시 제3국에 수입국도 포함되는지	147
60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정보 기재방법	148
61	원산지증명서 식 관련	148
62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	148
63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적용범위 안내	148
64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관련	148
65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149
66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 인정가능 여부	149
67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	149
68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50
69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부가가치기준) 기재 방법	150
7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150
71	원산지증명서의 의류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150
72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150
73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151
74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151
75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질의	151
76	원산지증명서 적용가능 여부	152
77	원산지증명서 제1란(수출자)에 수출자가 아닌 제조자를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아세안 FTA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152
78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개정사항 안내	152
79	인도네시아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송장 발행시 가격 결정	152
80	인도네시아 물품이 싱가포르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증명서를 토대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된 경우 구비서류	153
81	인증수출자 갱신시 부가가치 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으로 변경 갱신 가능 여부	153
82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의 한-아세안 FTA 적용 여부	153
83	적용관련 질의	153
84	적용관련 질의	154
85	적용대상	154
86	적용절차	154
87	제2202.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155
88	제6206호 원산지 결정기준	155
89	제8529.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방법	155
90	제3국 경유 물품	155
91	제3국 경유물품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관련	156
92	제3국 경유물품의 한-아세안 및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여부	156
93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157
94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가능 여부	157
9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협정적용 가능 여부	157
96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수출자 발행 송장번호 기재가능여부	157
97	제3국 발행송장 정보없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여부	158
98	제3국 송장 관련	158
99	제3국 송장 관련	158
100	제3국 송장 기재대상 여부	158
101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59
102	직접운송원칙 관련	159
103	직접운송원칙 관련 질의	160
104	채약당사국 정의 관련	160
105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	160
106	최종 송품장 발행국이 수입국인 한국일 경우에도 제3국 발행 송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61
107	태국의 개정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및 대응방안 전파	161
108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161
109	통과선하증권 인정여부	161

110	통과선하증권의 사후 발급시 인정 여부	162
111	통과선하증권의 인정여부	162
112	특정공정(재단 및 봉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162
113	특혜세율 적용관련 질의 회신	162
114	포장용기의 원산지 판정	139
115	폐기물 등 원산지 결정	163
116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시충족 요건인 경우 (4단위 변경 + 재단, 봉제 공정) 원산 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 표시는	163
117	품목분류 상이	163
118	한국산 미역을 태국에서 임가공 한 뒤 재수입시 협정 등 적용	163
119	한도수량내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64
120	해외임가공물품의 원산지 판정	164

6. 한-베트남 FTA

1	FOB가격 산정방법	164
2	1국 2협정의 적용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164
3	무상거래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164
4	베트남에서 원단 날염 공정 후 수입하는 경우 수리 또는 개조물품에 해당 여부	165
5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165
6	수리 또는 개조물품의 협정적용	165
7	우리나라와 세번이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165
8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문구 기재여부	165
9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166
1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66
11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시 기재 문구	166
12	위탁가공수입물품 수리 또는 개조 포함 여부	166
13	임가공비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166
14	제2008.19호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66
15	제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67
16	제6110.1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링킹공정이 포함되는지	167
17	중복적용 관련	167
18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중간재 규정의 적용 여부	167

7. 한-EFTA FTA

1	B/L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167
2	BWT거래시 비당사국수입자에게 발행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168
3	노르웨이산 연어를 덴마크에서 내장제거 및 포장후 수입시 원산지 적용 방법	168
4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수입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168
5	비당사국에서 라벨링 작업 수행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 여부	168
6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가능여부	168
7	수입신고 관련	169
8	.스위스산 물품이 벨기에 등을 경유할 경우 직접운송 증빙자료 구비 요건	169
9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 혼재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169
10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169
11	원산지증명서 관련	170
12	제3국 경유	170
13	제3국 경유 관련	171
14	제3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증빙서류	171

15	제3국 경유물품의 특혜적용 가능 여부	171
16	직접운송 관련	172
17	직접운송 적용 여부	172
18	최소허용수준 적용가능여부	172
19	협정발효전 수입신고	173

8. 한-인도 CEPA

1	누적기준 등 관련	173
2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FOB가격 산정방법	173
3	미조립물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세번 기재방법	173
4	수집한 폐기물의 완전생산기준 입증자료	174
5	스크랩으로 생산한 제품의 완전생산기준 충족 여부	174
6	완전생산된 의류에 폴리백 등 소매포장시 원산지 인정 여부	174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을 경유지인 인도에서 분할하역시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174
8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174
9	원산지증명서 관련	175
10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175
11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 기재 생략 가능여부	175
12	원산지증명서에 QR코드가 있는데 인장 등이 있어야 하는 지	175
13	원산지 증명서에 역내가치 포함비율 기재시 기재 방법	176
14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적용 가능여부	176
15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176
16	원산지증명서 제3국 송장란에 회사정보 기재 방법	176
17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177
18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177
19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법 관련	177
20	인도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QR코드만 있을 경우 인정 여부	177
21	중계무역 관련	178
2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178
23	품목별 원산지기준 HS	178
24	한국산 물품에 제3국 송장발행의 경우 증명서 제11란 기재 방법	178
25	한국산 원단으로 인도에서 생산된 의류 수입시 협정 인정 여부	179

9. 한-호주 FTA

1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이 번호만 다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인정 여부	179
2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79
3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포장이나 재라벨링을 거친 경우 협정 적용 인정 여부	179
4	원산지증명서 내 제3국 발행 송장 관련 일부 누락 경우	179
5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작성방법	180
6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	180
7	적용 조건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	180
8	중고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80
9	특별긴급관세 적용조치일 기준	180
10	특별긴급관세 적용조치일 기준	181
11	호주 상공회의서 발급 증명서 서식의 인정 여부	181

10. 한-영 FTA

1	6천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비원산지 제품 포함 여부	181
2	덴마크 업체가 영국 당국에서 인증받은 번호로 협정 적용 가능한지	181
3	본사의 전산시스템에서 발행되던 원산지증명서를 별도로 발행할 경우 인정 여부	182
4	영국산 물품이 EU회원국을 경유하여 수입될 경우 협정적용 여부	182
5	영국산 물품이 네덜란드를 경유시 혼입하여 수입될 경우 직접운송 충족 여부	182
6	영국생산 물품을 덴마크 수출자로부터 수입시 한-영 FTA 적용 여부	182

11. 한-터키 FTA

1	대 터키 아세테이트 직물 수출시 원산지신고서 발급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183
2	수입신고 후 발행된 비가공증명서로 협정적용가능 여부	183
3	원산지국가명 기재방법	183
4	터키산 물품을 말레이시아에서 환적하면서 컨테이너 번호와 Seal 번호가 변경된 경우 증빙은	183
5	협정관세 적용방법	184

12. 한-캐나다 FTA

1	건강기능식품의 비원산지 원료가 6% 정도인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 대상 여부	184
2	경유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서류	184
3	비당사국물품의 협정적용 가능여부	184
4	소액물품 관세면제규정	184
5	캐나다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미국수출자를 기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	185

13. 한-싱가포르 FTA

1	수리비 등에 협정관세 적용여부	185
2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문구	185
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186

14. 한-페루 FTA

1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186
2	참기름의 수입물량 제한 등은	186
3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 발급관련 개정사항 안내	186

15. 한-뉴질랜드 FTA

1	냉동녹용 협정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187
2	산 동물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187

16. 한-칠레 FTA

1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187
2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187

17. 한-콜롬비아 FTA

1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호만 다른 같은 회사일 경우 제8란 기재 방법	188
2	콜롬비아 산 커피 농축액을 파나마에서 단순 환적한 경우 구비서류	188

18. RCEP

1	RCEP 발효 전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88
2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방법	188
3	RCEP 원산지증명서 제11번란(원산지국가)에 국가명이 모두 대문자로 기재된 RCEP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인정 여부	189
4	RCEP 회원국으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RCEP 특혜세율 적용방법	189
5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RCEP 누적 입증서류 가능 여부	189
6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189
7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	189
8	제3자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89

19. 2개 FTA 적용

1	분할운송시 협정관세 적용여부 등(한-EU, 한-미 FTA)	190
2	동일상품 장기간 반복 수입시 원산지 포괄증명서 반복 사용 가능 여부(한-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FTA)	190
3	수입 통관후 다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적용 가능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191
4	싱가포르에서 수입할 경우 협정 적용 여부(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191
5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반제품의 중간재 지정 가능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191
6	원산지결정기준 해석(한-베트남, 한-인도 FTA)	191
7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한-터키, 한-EFTA FTA)	192
8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에 은행이 기재되어 있고 송장 등에는 수입자가 기재된 경우 유효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192
9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등(한-EU, 한-FTA)	192
10	주스생산 공정 중 특수기계 이용하여 탄소수입시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193
11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방법(한-중 FTA, APTA)	193
12	통과선하증권 인정가능 여부(한-미, 한-호주 FTA)	194
13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한-호주, 한-캐나다 FTA)	194

20. APTA 협정

1	공장자동화 감면물품 APTA 특혜관세 적용여부	195
2	국내 보세구역 반입 후 B/L을 양도하는 경우 AP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적정한 C/O 기재방법	195
3	누적적용을 위한 비양허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	195
4	누적적용을 위해 비양허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195
5	본선인도 가격	195

6	비당사국 경유물품 직접운송 충족여부	196
7	비당사국 경유시 증빙자료	196
8	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196
9	선적후 발급한 APTA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196
10	세번변경기준의 누적적용 가능여부	196
11	소급문구 인정 여부	196
12	원산지증명서 관련	197
13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197
14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기준 작성방법	197
15	원산지증명서 인정여부 관련	197
16	원산지증명서 품명 표기 관련	198
17	일반특혜관세 사후적용가능 여부	198
18	제3자 또는 제4자간 무역거래에서의 APTA 특혜관세 적용여부	198
19	중국산 물품이 홍콩경유시 직접운송 원칙 예외인정 여부	198
20	중국 생산 물품을 국내 수입시 제3국 발행 송품장 연정 여부	198
21	직접운송관련 AWB 인정범위	198
22	직접운송 입증서류 관련 질의	198
23	포장용기의 원산지 결정 방법	199
24	핸드캐리 반입물품 AP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의	199
25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관련 질문	200

21. 최빈개도국 특혜

1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제3국 송장 인정여부	200
2	경유지의 보세구역에서 검사받는 경우 최빈국 특혜적용시 필요한 서류	200
3	국산원재료 원산지 결정기준	200
4	다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사용시 최빈국 특혜 적용관련 민원	200
5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인정 여부	201
6	원산지 결정기준	201
7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201
8	원산지증명서 서식	202
9	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시 소급발급 문구 기재 여부	202
10	원산지증명서에 송장번호, 발행일자가 오류 기재되고, 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상이한 경우 유효성 여부	202
11	제3국 경유시 직접운송충족 입증자료	202
12	제3국 송장 인정여부 질의	203
13	최빈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조건	203
14	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한 민원 회신	203

질의회신 _ 항목별

I	거래당사자 요건	[Q1] ~ [Q20]	204
II	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Q21] ~ [Q43]	214
III	전시물품	[Q44]	226
IV	원산지 증명 요건	[Q45] ~ [Q100-2]	226
V	원산지 결정 기준	[Q112] ~ [Q164-2]	250
VI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Q165] ~ [Q177-2]	280
VII	협정세율 적용	[Q178] ~ [Q182]	286

VIII 수리비, 왕복 운임	[Q183] ~ [Q185]	288
IX 보세건설장, 자유무역지역	[Q186] ~ [Q194-2]	290
X 분할 수입, 분할 선적	[Q195] ~ [Q198-2]	292
XI 품목번호 상이	[Q199] ~ [Q201]	295
XII 소액물품 등 기타	[Q202] ~ [Q233]	296
1. FTA 소액물품	[Q202] ~ [Q207]	296
2. 원산지 증빙서류	[Q208] ~ [Q217]	298
3. 기타 사항	[Q218] ~ [Q233]	306
기획재정부 질의 답변		313
관세사 보수교육시 질의답변 내용_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315

지시 및 지침

1. 공 통

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심사 간소화 지침 통보	320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 제출 생략 지침 시달	320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취하제도 시행 지침 시달	321
4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시달	321
5 FTA 특례법령 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소급) 업무처리 지침 통보	330
6 FTA 특례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20호)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331
7 FTA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331
8 FTA 활용관련 민원상담지침 안내	332
9 HS 상이시 처리지침 관련	333
10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333
11 국산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 인정관련 처리 지침	335
12 관세법 시행령 개정(원산지증명 제출기한의 예외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336
13 관세사의 FTA 컨설팅 활성화 방안 통보	337
14 보세건설장 건설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지침 통보	337
15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FTA특례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관한 지침	338
16 선착순 방식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 수입통관처리 지침	338
17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처리에 관한 지침	341
18 업체별 인증 전환 유도를 위한 심사 지침 시달	342
19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344
20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349
2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송부	352
22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안내 시행 지침 시달	363
2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시 ‘교육 이수실적’ 처리방법에 대한 지침 시달	363
24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외부 원산지전문가’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 시달	363
25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364
26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안내	365
27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366
28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367

29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변경업무 처리지침 시달	368
30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지침 시달	369
31	자유무역협정 기업지원 업체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370
32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370
3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지침 통보	372
34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예산컨설팅 사업 운영 지침 시행	373
35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을 위한 통합지침 시달	374
36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378
37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383
38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해석 기준 통보	385
39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386

2. 한-EU FTA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집행 지침 수정 시달	389
2	철도복합운송 제품의 한-EU FTA 직접운송 증명에 관한 지침	394
3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시달	395
4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처리 지침 수정 시달	397
5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1의 주석6 적용 지침	398
6	한-EU FTA 원산지표기 및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업무 처리 지침 시달	400
7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조건부 인증제도 시행지침」 변경 시달	401

3. 한-영 FTA

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404
2	한-영 FTA 발효 관련 질의응답(Q&A) 자료	420
3	한-영 FTA 발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유의사항 안내	423
4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안	424

4. 한-미 FTA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시달	426
2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시달	439
3	한-미 FTA 발효 대비 FTA 사전심사업무처리 지침 시행	439
4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시달	444
5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협정관세 적용 지침 시달	446
6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446
7	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	449

5. 한-중 FTA

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451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관련 업무 처리 지침 안내	460
3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460
4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통보	461
5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462

6. 한-아세안 FTA

1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시달	464
2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개정서식 사용관련 지침 시달	466
3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개정에 따른 처리지침 시행	467
4 캄보디아,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및이행개시 통보	467
5 한-아세안 FTA 이행협상 합의사항 시행지침 송부	467
6 한-아세안 FTA 발표에 따른 한국원산지증명서 불인정사례 전파 시달	468
7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지침	468
8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시달	469
9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가격 기재 방법 안내	469

7. 한-EFTA, 칠레 FTA

1 한-EFTA, 칠레 FTA 등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469
2 한·EFTA FTA 체약상대국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	469

8. 한-뉴질랜드 FTA

1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470
-----------------------------	-----

9. 한-베트남 FTA

1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480
2 베트남측 FTA 특혜적용(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 변경에 따른 재 안내	486

10. 한-인도 CEPA

1 한-인도 CEPA 설명	487
2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지침 통보	491

11. 한-중미 FTA

1.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491
---	-----

12.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지침	506
2 칠레 사전판정(Advanced Ruling) 고시 번역 배포	506
3 한·칠레 FTA 부속서4 개정 교환각서 발효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안내	507
4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유의사항	507
5 한·칠레 FTA 특례법령 폐지에 따른FTA 협정대상물품 업무처리지침 시달	507

13. 한-캐나다 FTA

1 한-캐나다 FTA 지침	507
----------------------	-----

14. 한-콜롬비아 FTA

- 1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통보 513

15. 한-터키 FTA

- 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시달 521
2 대 터키 아세테이트 직물 수출시 원산지신고서 발급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527

16. 한-페루 FTA

- 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시행 527
2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안내 532

17. 한-호주 FTA

- 1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운영지침 시달 533
2 한-호주 FTA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 품목 운영 지침 541
3 한-호주 FTA 발효 관련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통보 541

18. RCEP

-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541
2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570

19. 한-이스라엘 FTA

- 1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572

20. 한-캄보디아 FTA

- 1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592

21. 한-인도네시아 FTA

- 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609

22. APTA 등 일반 협정

- 1 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처리 지침 통보 625
2 APTA 등 협정세율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허용 수정지침 시달 625
3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626
4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추가 지침 송부 626
5 한·중 간 APTA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안내 626
6 세계무역기구협정(WTO) 일반양허관세적용국가 통보 627
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627

※ 참고자료

- 1 한-EFTA HS기준연도 변환(HS2012→HS2017)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의사항 안내 628
2 중국세관의 인증수출자 관리방법 628
3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수량 단위 코드 목록 632
4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633
5 한-베 EDDDES 개통관련 공지사항 635

6 RCEP 회원국별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	636
7 RCEP HS기준연도 변환(HS2012→HS2022)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636
8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637
9 List of RCEP Parties'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Bodies as of 1 January 2022	637
10 중국세관의 RCEP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 공포에 관한명령	638
11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 원산지관리규칙(비공식 번역)	650
12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집행 규칙 [CAROTAR, 2020] FAQ	656
13 일본의 RCEP 협정 관련 질의응답.....	658
14 EU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 안내.....	661

부록 서식 등 참고자료

1 수출자용 표준 질의서(안)【서식】	664
2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 확인서류 안내	667
3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및 협약서	677
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	678